

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제안 이유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에 따라 “지방공무원교육원”의 기관명칭 사용의무화가 자율로
정하도록 하고 있고,

○ 도민교육을 병행하는 현행 교육여건과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
으로 거듭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주요 내용

○ 명칭변경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⇒ 충청북도자치연수원

○ 다른 조례의 개정(명칭변경)

-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,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, 충청
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,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

□ 검토 의견

- 현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시대흐름에 걸맞게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”으로 변경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교육원 기관명칭 자율화관련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, 개정명은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교육원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.
- 사실 지난 '97년부터 도민교육과 공무원교육이 통합되었음에도 획일화된 현 “지방공무원교육원”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참신한 이미지 보다는 폐쇄적인 이미지가 짙고 또한 다소간의 도민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.
- 이에 교육원에서는 2005년 12월 명칭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명칭 공모와 선별, 설문투표 등을 통해 개정명을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”으로 결정하고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,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.
- 다만, 개정 명칭이 확정될 경우 각종 교통시설물 표기 수정 등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는데 개략적인 사업량 및 소요사업비, 사업기간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.

붙 임 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